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5. 22 선고 2019가단5298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론 종결 2020. 4. 24

판결 선고 2020. 5. 22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E 전 1,838㎡ 중 1/2지분에 관하여, 망 F의 2002. 12. 8.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2019. 9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G과 F은 공유자로서 1987. 6. 16. 서귀포시 E 전 1,838㎡ 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고 한다) 중 1/2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,나머지 1/2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F은 2002. 12. 8. 상속인으로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다.

원고는 2016. 3. 3. G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G 명의의 1/2지분을 증여받고,2016 . 4. 26. 이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원고는 2019. 3. 2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232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1/2지분에 관하여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붙여 경매비용을 공제한 매각대 금을 원고가 1/2, 피고들이 각 1/4비율로 분배할 것을 구하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.

라. 위 사건에서 2019. 9. 10. 2019머582893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.

조정조항1.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시도 서귀포시 E 전 1,838㎡ 중 피고들 소유지분(1/2)을 원고에게 18,000,000원에 매도하고,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.

2.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제3항 기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제1항 기재 매매대금 18,000,000원을 지급한다.

3.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지분소유권이 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갑 제1호증,갑 제3호증, 갑 제8호증의 1내지 갑 제9호증 의 4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변론 전체의 취지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는, 위 조정조서에 따라 2019. 9. 25. 피고들에게 변제공탁을 하고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이행을 독촉하고 집행문을 신청하였으나 집행문 발급 불가 통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,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1/2지분에 관하여 ①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, ② 2019. 9. 25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.

나. 먼저 이 사건 소 중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살펴본다.

상속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 할수 있어 이는 등기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고(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), 원고로 서는 위 조정조서에서 인정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터 잡아 피고들의 등기신청권을 대위행사하여 단독으로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.

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.

다음으로 이 사건 소 중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살펴본다.

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(민사조정법 제29조), 소송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(민사소송법 제220조), 원고는 위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서 정한 1,8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집행문을 받아 위 조정조서로 이 사건 토지 중 F 명의의 1/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(민사집행법 제56조, 제57조, 제30조, 제263조).

그러므로 이 부분 청구 역시 소의 이익이 없다(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4민 상21판결 참조).

다.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.

판사 고흥석